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3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 8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0. 1. 8

다. 상정·의결일자 : 2010. 1. 13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 기구(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직급을 책정
  -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직급 하향조정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본청 담당부서의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 10명 책정 (암 별표3)

나. 총정원 631→ 632명(증1), 일반직 507→ 509명(증2), 기능직 83→ 82명(감1)

일반직 4급 2명 → 1명(감1), 일반직 5급 33명 → 35명(증2)

다. 기능적 6급 정원책정기준 8.5%이내 → 9%이내 (증 0.5%)

기능적 10급 정원책정기준 18.5%이상 → 18%이상 (감 0.5%)

####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2009. 12. 23 ~ 2010. 1. 2(10일간)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다. 예산조치 :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설기구인 생명환경 농업연구소의 신설에 따른 정원 책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향조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의 조정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 안 주요내용은
  -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6급 “8.5%이내”에서 “9%이내”로 10급 “18.5%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의 총수는 당초 631명을 632명으로 1명을 증원 하고, 일반직이 당초 507명을 509명으로, 기능직이 당초 83명을 82명으로 4급이 당초 2명에서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향조절)으로 5급을 당초 33명에서 35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본청에서 일반직 2명, 직속기관에서 일반직 1명, 지도직 5명, 읍면에서 일반직 1명이 각각 감원 되었고, 사업소에서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지도직 5명을 증원하여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정원으로 10명이 책정 조정되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 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원조정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며,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 조정이 없는지와 조직의 합리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행정직 5급도 소장이 될 수 있는데 농업직이나 다른 직렬에서 반발은 없겠는지?

◎ 답 :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을 행정, 농업, 지도, 생활 4개의 복수직렬이며,  
고성을 포함해서 남해, 하동, 산청, 거창군도 행정 5급이 센터소장의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 7. 토 론 :

## 8. 심사결과 :

○ 2010. 1.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